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김효정**

초 록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개념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높은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등 혼인 및 혈연 외적 관계에서 발생한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틀의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 개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대응 정책을 위한 논의의 시작은 혼인, 혈연관계에 기반한 협소한 가족 개념에서 확장된 친밀한 관계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인정해야 하며, 가족의 다양성과 관계의 탈표준화를 포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을 통한 친밀 관계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 대응의 목표는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 및 보호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젠더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친밀성, 관계의 탈표준화

* 이 글은 2020년 9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에서 발표한 내용과 2020년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여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중 저자가 작성한 “여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동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hjkim@kwdimail.re.kr)

I. 서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3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77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9명에 달하며, 주변인의 피해까지 포함한 피해자수는 최소 319명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의전화, 2022). 2009년부터 수집된 동 자료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피해자수는 2009년 7건, 2012년 49건, 2015년 95건, 2018년 125건으로 증가해왔으며, 2021년까지 최소 1,155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는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의한 여성 살인사건 보도의 증가는 관련 범죄의 증가 그 자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성격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친밀 관계 여성폭력, 여성살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실제 범죄의 발생 양상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총 살인범죄 건수 805건 중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24.3%로 가장 많았고, 타인(16.8%), 이웃·지인(16.3%), 애인(7.5%), 친구·직장동료(7.5%) 순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1: 44).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범죄에서 배우자에 의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범죄의 실제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성폭력과 폭행·상해 범죄의 경우에도 타인 등 관계를 알 수 없는 가해자를 제외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의 비중을 살펴보면, 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폭행·상해 범죄는 각각 12.9%, 7.2%,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비율은 각각 7.8%, 38.5%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중 배우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로부터 발생한 친밀 관계 폭력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배우자 항목이 필요하나 현행 피의자원표 상에는 동거친족, 기타친족으로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배우자로부터 발생한 폭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거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 발생 이후에도 신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친밀 관계 폭력인 가정폭력의 경우가 그러하다.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85.7%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었고, 경찰이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각각 2.3%, 0.8%로 낮았다(김정혜 외, 2019: 123). 여성폭력의 실태와 양상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접수된 신고 및 지원 건수를 통한 것인데, 이러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드문 상황이므로 관련 실태는 과소추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정도는 통계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폭력에 대응하는 한국사회의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과거 및 현재의 배우자를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과거나 현재의 연인 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²⁾. 지속적인 동거 관계에 있었을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넓은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이 또한 동거 관계가 없었던 연인 관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거 관계에 있지 않았던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에 의한 폭력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데,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나 도움 요청을 하기 어렵고,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다는 이유로 사소하거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박선영 외, 2016).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리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를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해자의 폭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력범죄를 오히려 축소하고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박복순 외, 2019).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대표적 형태로 스토킹 행위를 들 수 있다. 스토킹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조증상³⁾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젠더 기반 폭력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뒤 지속적으로 제안되었으나 모두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2021년 4월에서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당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스토킹의 정의와 처리 절차, 벌칙 등 처벌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이 미흡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제18조 3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김정혜·박보람·정다운, 20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4.21.).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폭력 중 하나로, 실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은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폭행·상해, 체포·협박·감금, 성폭력 등 전통적 유형의 폭력에서부터 불법촬영 및 유포, 유포협박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고, 잇따른 이별범죄로 인해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과거와 달리 개인적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 중시되고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 이슈가 사회적 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의 초점은 아직까지 혈연 및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의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개인의 생애기간 중 비혼 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우해봉, 2020),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31.7%로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통계청, 2021) 한국가족의 변화와 실천은 급변하고 있다.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그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삶에서 혼인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과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혼인관계에 제한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

3) 2018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381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159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세 건 중 한 건(48건) 꼴로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 의심 현상이 나타났다(KBS NEWS, 2019.5.22.).

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의 친밀 관계 폭력 개념과 정의, 관련 제도 및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이론적 개념을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친밀 관계 폭력에 대응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사회의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개념 검토

젠더폭력 관련 용어는 정치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용어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abuse)’이 있으며, 이는 다시 가족폭력(family violence), 아내구타(wife beating), 아내폭력(violence against wives), 아내학대(wife abuse), 아내폭행(wife assault), 부부폭력(marital violence), 배우자 학대(spouse abuse),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등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다(박언주, 2014: 314). 각각의 용어는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맥락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학대’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등 폭력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기 위해, ‘아내’ 또는 ‘여성’은 가정폭력이 가부장제와 불평등한 가족 내 성별 권력관계에 토대를 둔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가해자 및 피해자들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박언주, 2014: 314-315).

한국에서는 90년대 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가정폭력’ 용어

가 법적·정책적·학술적으로 주되게 사용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교제살인’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때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 등, 혼인 또는 혈연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가정폭력’과 배타적인 맥락에서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용어를 다르게 부르거나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온 측면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용어보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용어가 보다 빈번히 그리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은 우리사회에서 ‘친밀성’의 의미와 규범적 질서가 혼인 및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산업화 이후 중산층의 출현과 함께 근대 핵가족의 이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애 핵가족 모델이 ‘정상(normal)가족’ 규범으로 여겨져 왔다(이재경, 2015). 그러나 90년대 이후 결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생애 표준모델에 변화가 일어나고 비혼, 혼외출산, 혼외동거, 공동체 가족, 다문화 가족, 무자녀 가족, 이혼, 별거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실천이 증가하면서 혼인 및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친밀성 규범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김혜경 외, 2014; 이재경, 2022). 변화하는 친밀성의 실천과 규범적 차원에서 핵가족 제도의 영향력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은 변화된 친밀성의 실천이 기존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지 연인 등 그 외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지 구별하는 것에 집중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역시 관계의 친밀성과 젠더 기반 폭력의 맥락에서 접근되고 해석되기보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차이를 변별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친밀성 개념이 혼인 및 혈연관계, 또는 그 외의 관계로 나뉘어 수렴되면서, 오늘날 친밀성의 형성과 파트너십이 갖는 의미와 변화, 그 속에서 기존의 가족제도와 결혼이 갖는 제도적·규범적 의미의 변화, 친밀 관계에 기반한 젠더 기반 폭력의 특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그만큼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친밀성의 의미와 친밀한 관계를 구성하는 범위가 제도로서의 가족 경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서구에서는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

4) 이와 연관되는 대표적인 통계로 혼외출산율이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역사상 가장 높은 2.3%를 기록하였으나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혼외출산율은 54.5%, 영국 48.4%, 스페인 47.3%, 미국 39.6%, 독일 33.9% 순이다(통계청, 2020).

lence, IPV)이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된다. UN⁵⁾, 유럽성평등연구소(EIGE)⁶⁾, WHO⁷⁾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현재 또는 과거의 부부 또는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정의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여성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개념화하게 된 것은 1993년 UN 제48차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출발한다. 「여성폭력철폐선언」은 그 서문에서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관계의 표상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차별을 초래하며, 여성의 완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을 종속적 지위에 위치시키는 심대한 사회 구조 중 하나”임을 밝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불평등한 성별 위계에 있음을 천명하였다(UN General Assembly, 1993).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국제문서로 이는 여성폭력 이슈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물학적 범주가 아닌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 관점과 범주를 확장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신상숙, 2019).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차별 행위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 등으로 인해 대부분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발생 양상에 비해 신고되거나 드러나는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이들의 평등, 발전, 평화를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으며,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약속(SDGs)을 성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여성폭력의 핵심적 유형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성폭력과 성희롱, 인신매매와 성착취, 여성성기절단, 아동 결혼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⁸⁾.

5) UN Women. Facts and figure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unwomen.org/en/what-we-do/ending-violence-against-women/facts-and-figures>에서 2022.1.31. 인출.

6) EIGE.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eige.europa.eu/thesaurus/terms/1265>에서 2022.1.31. 인출.

7) WHO.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violence-against-women>에서 2022.1.31. 인출.

8) UN Women,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표 1〉 UN의 여성에 대한 폭력 유형

유형	내용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구타, 정서적 학대, 부부강간, 여성살해
성폭력과 성희롱	강간, 강요된 성적 행동, 원치않는 성적 접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강제 결혼, 길거리 괴롭힘,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인신매매와 성착취	성노예, 성착취
여성성기절단	여성성기절단
아동 결혼	아동 결혼

자료: UN Women,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un.org/en/events/endviolenceday/>에서 2022.1.31. 인출.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여성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성 폭력 용어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파트너 폭력(IPV),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abuse)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세계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를 가진 적이 있는 15-49세 여성 세 명 중 한 명(27%)은 친밀 관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⁹⁾, 살인 범죄의 여성 피해자 80%는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로부터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된다¹⁰⁾. 여성에 대한 폭력의 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에는 젠더에 따른 위계와 권력, 차별을 초래하고 젠더화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젠더폭력의 맥락이 존재한다.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극단적 방법 중 하나는 폭력으로, 젠더폭력의 만연과 지속, 사소화와 은폐는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감추고 지속시키는데 기여한다. 젠더폭력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방식으로 젠더에 기반한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친밀성을 둘러싼 관계의 역동 속에서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폭력이 사용될 때 젠더폭력은 언제나,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또는 파트너 간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친밀 관계 폭력이 가장 널리 퍼져있는 젠더 기반 폭력의 한 형태임을 지적

<https://www.un.org/en/events/endviolenceday/>에서 2022.1.31. 인출.

9) WHO.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violence-against-women>에서 2022.1.31. 인출.

10) UN. World's Women 2020 - Intimate partner violence is the most common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un.org/en/desa/world%20%80%99s-women-2020-intimate-partner-violence-most-common-form-violence-against-women>에서 2022.1.31. 인출.

한다¹¹⁾12). 젠더 기반 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대면관계에서부터 온라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고 상호배타적인 방식이 아닌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발생하여 종종 서로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인종, 장애여부, 연령, 계층, 종교, 성별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평등 발생 요소들은 젠더기반 폭력행위와 연관되면서 개별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여러 젠더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부정적 효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친밀 관계 폭력은 주로 성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여성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¹³⁾. EIGE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통일된 정의 및 유형을 사용하여 젠더폭력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장려하고 있는데, 2014년 8월 발효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와 근절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에서 정의하는 여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네 가지 핵심 유형을 따른다¹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여성폭력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표 2>에 제시된 여성에 대한 폭력 유형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며, 다만 4가지 핵심 유형 외에도 “친밀 관계 폭력의 기타 구성 요소 (other constituent elements of IPV)”라는 내용을 추가한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EIGE, 2017: 6).

11) EIGE. Forms of violence. <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nce/forms-of-violence>에서 2022.1.31. 인출.

12) 이러한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와 함께, EIGE는 와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통계적 정의(statistical definition)를 제시한다. 통계적 관점에서 친밀 관계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주거지를 공유하거나 공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또는 현재 파트너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 행위”로 정의된다.

13) EIGE. Forms of violence. <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nce/forms-of-violence>에서 2022.1.31. 인출.

14) ‘이스탄불 협약’으로도 불리는 유럽평의회 협약은 비유럽권 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는 법세계적 조약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유럽 조약이다(Council of Europe, 2019).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에 관한 정의는 동 조약의 Article 3(a)에,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에 대한 정의는 Article 3(b)에 제시되어 있다(Council of Europe, 2022).

〈표 2〉 EIGE의 여성에 대한 폭력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폭력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결과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행위. 신체적 폭력은 심각하거나 경미한 폭행, 자유의 박탈, 그리고 살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성폭력	동의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행위. 성폭력은 강간 또는 성폭행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심리적 폭력	개인에게 심리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심리적 폭력은 강압, 명예훼손, 언어적인 모욕 또는 괴롭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경제적 폭력	개인에게 경제적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또는 행동. 경제적 폭력은 재산피해, 경제적 자원이나 교육,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의 제한, 또는 위자료 지불 등의 경제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자료: EIGE. Forms of violence. <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nce/forms-of-violence>에서 2022.1.31. 인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건강권의 관점에서도 접근된다. WHO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통제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WHO, 2012). 이는 친밀성을 둘러싼 관계를 중심으로 친밀 관계 폭력을 정의하는 것으로, 폭력의 가해자가 과거 또는 현재 피해자와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맺은 사람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친밀 관계 폭력은 여성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 남성에게 행사하거나, 동성 간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친밀 관계 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부정적 효과는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평등한 성별 위계에 기반한 젠더 기반 폭력의 맥락이 작용한 결과이다. WHO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틀의 모든 수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포괄적이고(comprehensive), 다 부문적이며(multi-sectoral), 장기적인(long-term)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WHO, 2012: 7).

〈표 3〉 WHO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인 폭력 행동
성폭력	강제적인 성관계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성적 강압을 포함하는 성폭력
정서적 폭력	모욕, 경멸, 끊임없이 굴욕감을 주는 것, 물건을 파괴하는 등 위협하는 것,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 아이를 빼앗을 것이라는 협박 등의 정서적 폭력
통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위치를 추적하고, 고용, 교육, 의료, 경제적 자원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제 행위

자료: WHO(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intimate partner violence*, p.1.

이상으로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젠더 기반 폭력으로써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UN, EIGE, WHO 등 주요 국제기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불평등한 성별 위계에 기반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맥락에서 논의해 왔으며,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파트너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친밀 관계 폭력은 혼인 여부, 관계의 현재적 상태, 주거지 공유 여부, 피해자 및 가해자 성별의 제한 없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남성 및 동성 간 관계에서도 친밀 관계 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성별 위계에 기반하는 젠더 기반 폭력의 맥락에서 친밀 관계 폭력 피해의 대부분은 여성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Ⅲ.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국가별 대응 사례 분석: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은 90년대 이후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온 주요 해외 국가이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젠더 폭력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가정 먼저 진행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개별 국가의 대응 사례로 미국과 영국 두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과 법·제도적 기틀이 형성되어 온 주요 맥락과 특징을 살펴본다.

1. 미국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여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

고, 1994년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이 제정되었다.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은 범죄 발생시 자동적·의무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기소 시에도 민사배상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법무부 내에 여성폭력 담당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연방 사법부 차원에서 여성폭력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 명칭에 ‘여성폭력’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남성 폭력 피해자, 데이트 폭력, 성범죄와 스토킹 등의 범죄도 모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여성 또는 가정폭력 이슈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법제처, 2013).

2013년 개정된 「여성폭력방지법」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주인 여성 뿐 아니라 이민자, 성적 소수자, 대학생, 청소년, 공영주택 주거인 등 모든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로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해당 법에 근거하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확대하였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여성 폭력 범죄와의 전쟁 지원(STOP), 성폭력 서비스 프로그램(sexual assault services program, SASP), 피해자에 대한 민간 법률지원(civil legal assistance for victims, LAV), 체포촉진 지원(grants to encourage arrest, GTEAP) 등이 있다(법제처, 2013; The White House, 2014).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맥락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델루스 모델(Duluth model)을 들 수 있다(Barner and Carney, 2011).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마을인 델루스는 1982년 미국 최초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폭행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 정책을 채택한 지역이다. 당시 이 지역에서 배우자 또는 데이트 관계 가해자로부터 발생한 경미한 폭행은 경범죄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델루스 모델에 근거한 정책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데이트 상대방으로부터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근거를 인정해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주거퇴거 등의 추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원칙을 특징으로 하는 델루스 모델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는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에 있다. 법원은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지원 등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원할 민간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민간기관은 판결된 이행 명령을 진행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한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민간기관과 수사정보 등을 교류하며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육의 이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는 델루스 모델의 성공을 견인한 일등공신으로 미국 각 지역의 여성폭력 지원체계 구축과

정에서 델루스 모델은 성공사례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의무 체포제(mandatory arrest)와 의무 기소제(no-drop policy or mandatory prosecu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범죄와의 전쟁 지원(STOP)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의무체포와 검찰의 의무기소를 장려하는 방식의 사법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복지타임즈, 2018.7.19.).

미국에서 친밀 관계 폭력은 공중보건 이슈로도 다루어진다. 미국 질병예방 센터(CDC)는 친밀 관계 폭력을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스토킹 또는 심리적 피해”로 정의하고, “이성에 커플 뿐 아니라 동성 커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성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⁵⁾. CDC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문제로 바라보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표로 폭력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설정한다. 이는 ‘폭력의 예방(prevention)-피해자 보호(protection)-가해자 처벌(prosecution)’ 모델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정책적 대응 방안 중, 예방, 특히 폭력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¹⁶⁾. ‘예방-보호-처벌’로 이루어진 젠더폭력 대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의 예방으로, 그 중에서도 폭력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1차 예방 정책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은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조치인 반면, 폭력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1차 예방은 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실질적인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UN Women, 2012: 30). 이런 점에서 친밀 관계 폭력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개인과 지역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CDC의 목표와 전략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차 예방을 위한 CDC의 주된 예방 전략은 건강하고, 존중적이며, 비폭력적인 관계를 고취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CDC는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혼인상태 및 주거지 공유 여부에 관계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개인들을 모두 친밀 관계 폭력 예방의 대상으로 적극적

15) CDC.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index.html>에서 2022.1.31. 인출.

16) 여성폭력의 예방은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으로 구분된다. 1차 예방은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여 폭력발생 자체를 막는 것을 의미한다. 2차 예방은 특정 집단에 대한 조기개입 정책 등을 통해 폭력이 발생한 위험이 높은 집단에의 개입을 통해 폭력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3차 예방은 폭력 발생 이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VicHealth, 2007).

으로 고려하면서, 아래의 6가지 구체적인 폭력 예방 전략과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표 4〉 CDC의 친밀 관계 폭력 예방 전략 및 접근법

전략	접근방법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 기술 가르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정서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커플 대상의 건강한 관계 프로그램 운영
영향력 있는 어른 및 동료들과 교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예방의 동맹자로서 남성과 소년의 참여 독려 • 제3자(주변인) 대상 역량강화와 교육 • 가족 기반 프로그램 운영
파트너 폭력에 대한 발달경로 차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가정방문 진행 • 가족 참여를 통한 유치원 교육 강화 • 부모 역할 및 가족 관계 프로그램 운영 • 취약아동, 청소년, 가족 대상 돌봄
보호 환경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분위기 및 안전도 증진 • 조직 내 정책과 직장 분위기 증진 • 지역 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재정 안정성 강화 • 일-가족 생활 지원 강화
안전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방식의 피해자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주택 프로그램 운영 • 최초 대응자에 대한 법적 보호 • 내담자 중심의 접근방식 채택 • 10대 데이트폭력(teen dating violence, TDV)을 포함한 친밀 관계 폭력(IPV) 생존자를 위한 치료 및 지원 제공

자료: CDC. Preven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prevention.html>에서 2022.1.31. 인출.

이처럼 미국에서는 2013년 개정된 「여성폭력방지법」을 중심으로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피해자의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거 및 현재의 배우자 및 파트너로부터의 폭력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폭력 행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된다. 또한 성적소수자, 이민자, 대학생 및 청소년 등 다양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확대하였다. 여러 주에서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의무체포 및 의무기소 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에 기반한 가정폭력 대응을 주요 모델로 삼고 있다. 또한 건강권의 관점에서 친밀 관계 폭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2. 영국

2000년대 이후 영국의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의 흐름은 다양한 관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복합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해왔다. 2014년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 소위 ‘클레어법’(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도입, 2021년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 제정 등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국가적, 중장기적 차원에서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영국의 정책은 2010년 10월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이 발표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요청(Call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Home Office, 2010). 영국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젠더 기반 범죄(gender-based crime)이며 강력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취하며, 모든 여성과 여아가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폭력의 예방, 폭력 발생시 적절한 지원의 제공,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의 긴밀한 협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 4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매해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Home Office, 2010: 5).

2021년 영국은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가정폭력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을 제정하였다(Home Office, 2022; 주 영국 대사관, 2021.5.21.). 기존 영국에서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16세까지를 가정폭력 피해자로 포함하고 강압적 통제(coercive or controlling behavior)까지 가정폭력으로 간주하는 확대된 정의를 사용해 왔다. 영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법률상 처벌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존에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까지 가정폭력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이나 동거인에 대한 경제적인 폭력 또는 통제까지 가정폭력으로 범주화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방지감독관(domestic abuse commissioner)를 설치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설정하였다. 경찰은 가정폭력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보호

통지(domestic abuse protection notice, DAPN)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시 동거중인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관련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의 책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법원 재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심문을 금지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가 특별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고의로 심각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행위, 중대한 상해를 초래하는 폭력적인 성관계 행위 등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은 유포하겠다는 협박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영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2019년 초안(draft bill)이 제출되었고 상하원합동위원회 사전입법검토 등 의견수렴과 보완과정을 거쳐 2021년 제정되었다(Home Office, 2022; 주 영국 대사관, 2021.5.21.). 영국 「가정폭력방지법」이 포함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영국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가정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정서적, 통제적, 강압적, 경제적 학대임을 강조 • 가정폭력방지감독관(the office of Domestic Abuse Commissioner)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감독관의 권한과 기능 규정 • 새로운 가정폭력보호통지(Domestic Abuse Protection Notice) 및 가정폭력보호 명령(Domestic Abuse Protection Order) 도입 • 지방 당국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에게 피난처 또는 다른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의무 부여 • 민사 및 가정법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질신문 금지 • 가정폭력피해자는 형사, 민사 및 가정법원에서 특별조치(special measures)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적 추정 제공 • 아동법(Children Act 1989) 섹션 91(14)에 따라 금지명령(barring order)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가족 소송(family proceedings) 방지 • 통제 및 강압적 행동에 이별 후 학대 행위를 포함하도록 확장 • 괴롭힐 의도로 사적인 성적 사진 및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를 그러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장 • 치명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타인의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키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 • 인간은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일반 명제를 법령에 다시 명확하게 명시 • 가정폭력가해자의 가석방 조건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 •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클리어법)에 대한 법률상 지원 지침을 마련 •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노숙자 지원의 우선순위 제공 •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유로 지역 당국이 입차권을 부여하는 경우, 안전한 평생의 입차를 제공

자료: Home Office. Domestic Abuse Act 2021: overarching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domestic-abuse-bill-2020-overarching-factsheet>에서 2022.1.31. 인출.

영국의 「가정폭력방지법」 Part 1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이란 16세 이상의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personally connected)” 개인들 간의 행위가 “폭력적(abusive)”이었을 경우를 의미하며, 폭력적인 행위의 유형은 (a)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b) 폭력적 또는 위협적 행위, (c) 통제 또는 강압적 행위, (d) 경제적 폭력, (f) 심리적, 정서적 또는 기타 폭력으로 구성된다¹⁷⁾. 이때 ‘경제적 폭력(economic abuse)’은 상대방이 금전이나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능력이나 재화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능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¹⁸⁾. ‘통제 행위(controlling behaviour)’는 개인을 지지받을 수 있는 자원들로부터 격리하고 고립시키고, 개인이 획득한 자원과 능력을 착취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저항, 탈출에 필요한 수단을 박탈하여 그들의 일상 행동을 조정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¹⁹⁾. ‘강압적 행위(coercive behaviour)’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위협, 굴욕 및 협박 또는 그 외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처벌하거나, 겁주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들을 말한다²⁰⁾. 이러한 법적 정의는 기존의 전통적 가정폭력 유형이었던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더해 경제적인 폭력과 통제, 강압적 행위까지를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personally connected)”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다.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a) 혼인상태에 있(었)거나 (b) 동반자 관계(civil partnership)에 있(었)거나, (c)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했거나(합의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 서로 동반자 관계를 맺기도 합의했거나(합의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 서로 친밀한 개인적 관계(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를 맺었거나, (f) 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g) 서로 친척 관계인 경우를 의미한다²¹⁾. 즉 16세 이상이면서 과거 또는 현재에 위에 나열되어 있는 관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와 강압적 행위는 영국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17) Section 1 of the Domestic Abuse Act 2021.

18) *ibid.*

19) Section 68 of the Domestic Abuse Act 2021, Section 76 of the Serious Crime Act 2015.

20) *ibid.*

21) Section 2 of the Domestic Abuse Act 2021.

이처럼 영국의 경우에는 법안의 명칭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용어보다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젠더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그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통제 및 강압적 행동, 경제적 폭력,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또는 기타 폭력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적 측면에서 혼인 또는 혈연관계로 협소하게 정의되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과거 및 현재의 부부와 친밀 관계 파트너, 그 외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맺은 자, 가족구성원 및 친척 등을 포함시켜 가족 구성원간에 발생한 폭력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친족간 폭력 등에 대해서도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방지감독관을 제정하여 법적 권한과 기능을 규정하고, 가정폭력 보호통지 및 보호명령을 새롭게 도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질신문을 금지하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원에서 특별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적인 추정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가정폭력의 정의와 관계를 크게 확장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및 시행은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영국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폭력 대응체계 및 절차의 실효성 여부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 오랫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와 회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정폭력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젠더 관점이 주요하게 개입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영국 경찰은 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폭행 수준으로 간주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4). 법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향후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분석과 논평이 가능할 것이다.

IV. 결론: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지금까지 주요 국제기구들과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개념과 정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9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들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의 표상이자 위계적 젠더질서를 지속시키는 심대한 사회 구조로 인식하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개념은 1993년 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 이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다.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파트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과 통제 및 기타 학대 행위를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90년대 후반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해외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혼인 관계에 제한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의 형성, 혼외 출산 등 결혼에 종속되지 않는 가족의 구성, 동성 결혼의 합법화 등 가족과 친밀성을 둘러싼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혼인 또는 혈연관계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파트너 폭력(IPV)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주거지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친밀 관계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제공하고,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와 의무기소를 진행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고, 가정폭력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을 확장하여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피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향후 우리나라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적 정의의 측면에서 성별, 혼인상태, 성적 지향, 주거지 공유 여부 및 현재 관계 유지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개념화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혼 감소, 혼외출산 및 동거의 증가, 동성결혼 합법화 등 가속화되고 있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친밀성의 새로운 실천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한국의 경우 ‘결혼=출산’의 강한 연결고리로 인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생애 비혼기간의 증가, 결혼율 감소 및 이혼율 증가, 1인가

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 및 가족생활을 둘러싼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거에 대한 찬성 의견은 2012년 45.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56.4%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고, 2020년에는 59.7%를 기록했다²²⁾.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2018년 처음으로 30%를 넘었고, 2020년에는 30.7%로 증가하였다²³⁾. 2021년 하반기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등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0.6.).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족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논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의 초점은 혼인 및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의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가해자와의 관계적 차원에서는 주로 가정폭력의 틀 안에서 남성 배우자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피해유형의 측면에서는 성적 폭력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소한 관점으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예방과 근절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인정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관점을 취해야 하며, 이는 가족의 다양성과 관계의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를 인정하고 포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친밀 관계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기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 한국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정책 마련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해당 여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특별법」 등 별도 법안을 마련하자는 방안,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친밀 관계 폭력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해방 입법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나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답보하는 양상을 보이

22)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1SSFA051R에서 2022.1.31.인출.

23)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4R&conn_path=I2에서 2022.1.31.인출.

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과 분리된 별도의 특별법(데이트폭력처벌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은 혼인 및 혈연관계에 근거하여 이성애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밖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친밀한 관계의 복합적인 양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가족과 친밀성의 변화에 걸맞은 대응 방안이 되기 어려워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친밀 관계 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 법제도 마련과 정책 대응에 관한 다양한 기초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사회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밀 관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목표는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관련 법의 목적에서 ‘가정유지’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제정 당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만을 법의 목적으로 삼았고, 이에 가정의 보호만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2002년 6차 개정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추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변화의 양상은 미미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에는 여전히 ‘가정보호’가 내세워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패러다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의사존중 조항으로 인해 심각한 사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박복순, 2018: 187; 뉴스포스트, 2021.9.17.). 미국 다수의 주에서 가정폭력 발생 시 의무체포 및 의무기소를 통한 엄중한 사건 처리 절차는 밝는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8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도 주요하게 언급된다²⁴⁾. 최종견해(CEDAW/C/KOR/CO/8) 23(b)항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동성커플 및 그 가족들, 그리고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상담기소 유예제도를 폐지하고,

24) 197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당사국들은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한국은 1984년 12월 동 협약에 비준하여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왔으며,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가 발표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이러한 사건에서 화해 및 조정 제도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법적 제재 하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며,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체포 의무 정책을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과거 또는 현재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은 복잡한 맥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중요한 결정 요소로 삼는 것은 폭력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의 안녕을 침해하고,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갖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해, 현행 처벌법 상 규정된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등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방안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박선영 외, 2016: 140-141). 영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처벌법」이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목적을 명확히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두고, 가정폭력 및 피·가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글에서 도출된 방향성과 관점을 바탕으로 향후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모색하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글에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 속에서 「가정폭력처벌법」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2019년 12월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어 만 2년이 경과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본법과의 연관성 속에서 확장된 논의를 전개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2a).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2022.1.31.인출.
- _____(2022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2022.1.31.인출.
- 국회미래연구원(2019).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
- 김정혜·박보람·정다은(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혜·주재선·정수연·동제연·김흥미리·심선희·최현정·허민숙(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경·강이수·김현미·김혜영·박언주·박혜경·손승영·신경아·은기수·이선이·이여봉·함인희·황정미(2014).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 뉴스포스트(2021.9.17.). [가정폭력]② “처벌 원하세요?”…피해자에 결정 떠넘기는 사법부.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548>에서 2022.1.31. 인출.
- 대검찰청(2021). 2021 범죄분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4.21.). 22년 걸린 스토킹처벌법…주요 내용과 보완해야할 점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504>에서 2022.1.31. 인출.
- 박복순(2018).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여성연구. 통권99호. 181-218.
- 박복순·전혜상·김정혜·정수연·고현승(2019).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I):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황정임·송치선·김현아·김정혜(2016).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박언주(2014). “가정폭력의 문제와 정책적 대응”. 김혜경(편).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314-335.
- 법제처(2013).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개관.

-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ST_SEQ=316&CTS_SEQ=31941&ETC=&에서 2022.1.31. 인출.
- 북지타임즈(2018.7.19.). 미국, '회복적사법' 통해 가정폭력 예방한다.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41>에서 2022.1.31. 인출.
- 신상숙(201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운동의 오래된 미래, 정책의 새로운 비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주최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2019.2.18.).
- 여성가족부(2018).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전해(비공식 번역문).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currentpage=5&menuid=001003007007&pagesize=10&boardtypeid=7065&boardid=7607011>에서 2022.1.31. 인출.
- 우해봉(2020).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동향과 특징.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 대전: 통계개발원.
- 이재경(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가족: 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한국문화연구. 제29권. 283-310.
- _____(2022). 한국 가족. 신가족주의에서 포스트가부장제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주 영국 대사관(2021.5.21.). (최신 영국 입법동향) 2021 가정폭력방지법 소개.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8/view.do?seq=134454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서 2022.1.31. 인출.
- 통계청(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 _____(2021).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_____. 사회조사. 각년도.
- 한국여성의전화(2022). 2021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의한 여성살해 분석.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73502에서 2022.3.15. 인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KWDI Brief. 제47호.
- _____(2022). "영국: 가정폭력법 제정 및 시행 현황". KWDI 해외통신. 2022년 1·2월 합본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6.).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전체

23,383,689세대 중 1인세대 9,367,439세대(40.1%) 차지.

Barner, J., & Carney, M.(2011). Interventi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 Historical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26, 235-244.

CDC.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index.html>에서 2022.1.31. 인출.

_____. Preven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prevention.html>에서 2022.1.31. 인출.

Council of Europe(2019). *The Istanbul Convention-A Powerful Tool to End Gender-Based Violence: A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on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_____(2022).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CETS No.210).

Domestic Abuse Act 202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1/17/contents/enacted>에서 2022.1.31. 인출.

EIGE(2017). *Glossary of definitions of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eige.europa.eu/publications/glossary-definitions-rape-femicide-and-intimate-partner-violence>에서 2022.1.31. 인출.

_____. Forms of violence.

<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nce/forms-of-violence>에서 2022.1.31. 인출.

_____.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eige.europa.eu/thesaurus/terms/1265>에서 2022.1.31. 인출.

Home Office(2010). Call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7905/vawg-paper.pdf에서 2022.1.31. 인출.

Home Office(2022). Domestic Abuse Act 2021: overarching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domestic-abuse-bill-2020-overarching-factsh>

- eet에서 2022.1.31. 인출.
- KBS NEWS(2019.05.22.). [단독] 여성 살인 사건 30%에는 ‘스토킹’ 있었다…판결문 381건 분석.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06330>에서 2022.1.31. 인출.
- Serious Crime Act 201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9/contents/enacted>에서 2022.1.31. 인출
- The White House(2014). *1 is 2 MANY; Twenty Years Figh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 UN General Assembly(199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20 December 1993, A/RES/48/104.
- UN Women(2012). *Handbook for National Action Plans on Violence against Women*. New York: UN Women.
- _____.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un.org/en/events/endviolenceday/>에서 2022.1.31. 인출.
- _____. Facts and figure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unwomen.org/en/what-we-do/ending-violence-against-women/facts-and-figures>에서 2022.1.31. 인출.
- UN. World’s Women 2020 - Intimate partner violence is the most common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un.org/en/desa/world%E2%80%99s-women-2020-intimate-partner-violence-most-common-form-violence-against-women>에서 2022.1.31. 인출.
- VicHealth(2007). *Preventing Violence Before it Occurs: A Framework and Background Paper to Guide the Primary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Victoria*. Melbourne: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 WHO(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77432>에서 2022.1.31. 인출.
- _____.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violence-against-women>에서 2022.1.31. 인출.

Abstract

Policy Direction and Respons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Korea

Hyojung Kim*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world.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 Korean society. The provis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s also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definition, and response direc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wo foreig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ase of Korea.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policy directions for preven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should recognize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family, as well as the de-standardization of family and intimate relationship in modern society. It is also discussed that a legal framework to address intimate partner violence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 goal of policy response is to support and protect victims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Keywords : intimate partner violence, gender-based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domestic violence, intimacy, de-standardization of relationship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